

#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84호
2. 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1. 4. 1.
4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### II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수강료 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포함코자 함.

### III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를 포함토록 함(안 제9조제1항제6호 신설).

#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84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는 ‘병역명문가 선양 사업’ 을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.
- 병역명문가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.
-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전국에서 6,395가문이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,198가문이 선정되었습니다.

[표-1] 병역명문가 선정현황

구분	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	'15년	'14년	'13년	'12년	'11년~'04년	
가문	전국	6,395	1,017	741	714	492	560	466	497	545	301	1,062
	서울	1,198	187	157	138	82	95	83	100	91	69	196

-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, 서울시는 2015년에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

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.

-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·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.

**[표-2]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현황**

소관위원회	조례안	혜택
교통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주차요금 20% 감면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문화체육관광	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관람료 면제

- 동 개정조례안 또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예우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.
- 아울러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정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, 공공시설의 목적,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바, 동 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.<sup>1)</sup>
- 그러나 동 조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율을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<sup>2)</sup> 「지방자치

1)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

2) 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
법」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<sup>3)</sup> 추후 교육규칙에 규정된 수강료 감면율을 동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그리고 교육감은 현재 교육규칙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[표-3] 수강료 감면 비율

구 분		감면 비율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100%
국가보훈대상자	본인	100%
	유족 및 가족	50%
장애인	장애의 정도가 심함	100%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	50%
만 65세 이상인 자		100%
다문화가족 구성원		50%

※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]

○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‘병역  
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’은 의미가 중
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
6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-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3) 제39조(지방의회회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
    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복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감면대상자들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6136, 2021.4.13.).

- 이와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“예우대상자”란 “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어,<sup>4)</sup> 예우대상자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규정할 경우 마치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, 동 규정은 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”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---

4)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
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  
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  
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# 관계 법령

## 병역법

[시행 2020. 12. 22.] [법률 제1768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(宣揚)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6. 4.]

##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

[시행 2020. 9. 10.] [병무청훈령 제1728호, 2020. 9. 10.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병역법」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1. 21>

1. "병역명문가"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(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)을 말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0. 5. 4., 개정 2012. 11. 21., 단서신설 2012. 11. 21., 개정 및 단서삭제 2013. 12. 11., 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2. "부상금"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3. 12. 11., 2019. 3. 11.>
3. "병역명문가 가족"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개정 2013. 12. 11., 2020. 2. 26.>
4. "병역명문가 대표"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 1. 8., 개정 2019. 3. 11.>

제2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)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. 다만,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
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 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 복무를 마쳤거나,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(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). 다만, 현역 복무 중 전사·순직한 사람이나 전상·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및 단서신설 2019. 3. 11., 개정

2020. 2. 26.>

2.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3.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·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 <개정 2020. 2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6. 11. 30., 본항개정 2019. 3. 11.>

1. 병역판정검사·입영 기피,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
2.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3.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. 다만,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4.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
  - 가. 귀휴 전역 정교사(구 병역법 1957. 8. 15., 제8조)
  - 나. 해군 예비역장교·하사(구 병역법 1981. 12. 31., 제62조의2)
  - 다. 교대예비역 하사(RNTC)(구 병역법 1983. 12. 31., 제51조)
  - 라. 예비역 공중보건 의사(구 병역법 1978. 12. 5., 제30조)
  - 마. 자연계교원(구 병역법 1981. 6. 5., 제39조의 2)
  - 바. 특수전문요원(구 병역법 1981. 6. 5., 제30조의 2)
  - 사. 승선근무예비역(병역법 제21조의2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「병역법」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, 개정 2020. 2. 26.>

[본조신설 2013. 12. 11.]

제3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13. 12. 11.]

##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<개정 '10.5.4>

제4조(병역명문가 신청)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
②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, 독립군·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, 2020. 2. 26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은 방문, 우편, FAX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
[본조개정 2013. 12. 11.]

제5조(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)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, 본항개정 2019. 3. 11.>

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

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3. 11.>

제6조(병역사항의 확인)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(별지제4호서식)을 작성하고,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, 군번, 계급, 입영일,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·기재하고,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16., 2012. 2. 1., 2013. 12. 11.>

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,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.

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
제7조(병역명문가 선정 등 <개정 2010. 5. 4.>)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, 별지 제4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,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3. 12. 11., 본항 개정 2019. 3. 1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집중 접수기간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
제8조(신청결과 안내)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,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5. 4.>

제9조(업무분장)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10. 5. 4., 2019. 3. 11.>

1. 민원실 소관부서(「병무청 사무분장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.)의 장: 병역명문가 병역사항 확인 <개정 2008. 4. 16.,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2. 운영지원과장: 병역명문가 접수·선정 및 결과보고 등 <개정 2008. 4. 16., 2010. 5. 4., 개정 2019. 3. 11.>

제10조(문서 관리)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,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개인별 병적조회(확인)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>

제10조의2(전산정리)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병역이행자, 우대시설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1.>

[본조신설 2013. 12. 11.]

### 제3장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
제11조(설치) 병무청장은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
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>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병역명문가 선정 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,

2019. 3. 11.>

제1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6. 1. 8.>

1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<신설 2019. 3. 11.>
2. 표창 심사기준 <개정 2019. 3. 11.>
3. 표창대상가문의 선정
4.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 3. 11.>

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8.>

제14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4장 표창

제15조(주관)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>

제16조(표창 및 부상금)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

1. 대 상: 대통령상
2. 금 상: 국무총리상
3. 은 상: 국방부장관상
4. 동 상: 병무청장상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상 <개정 2019. 3. 11.>

② 삭제 <2008. 12. 12.>

③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12.>

#### 제5장 선양 및 홍보

제17조(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 <개정 2010. 5. 4., 2019. 3. 11.>)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"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"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7. 11. 7., 2019. 3. 11.>

② 삭제 <2006. 10. 12.>

제18조(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9. 3. 11.>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(출납)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11. 21., 2019. 3. 11.>

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9. 3. 11.>

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. <본항개정 2016. 1. 8., 2019. 3. 11.>

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2019. 3. 11.>

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1. 21., 개정 2019. 3. 11.>

제18조의2(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)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(별지 제13호서식)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,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8.]

제19조(홍보)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언론 보도 등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5. 26., 2006. 10. 12., 2008. 4. 16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3. 10. 4., 2019. 3. 11.>

제20조(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<2008. 12. 12., 2020. 9. 10.>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12., 2010. 5. 4., 2012. 2. 1., 2012. 11. 21., 2017. 11. 7., 2019. 3. 11.>

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
2. 주민자치센터,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
3.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·배포
4.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개정 2020. 9. 10.]